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 시행에 따른 영주권 문제 고찰*

이경규**
lk5120@deu.ac.kr

<目次>

- | | |
|------------------------------|-----------------------------|
| 1. 머리말 | 4.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 시행에 따른 문제점 |
| 2. 한일회담 법적지위에 관한 주요 내용 | 5. 맺음말 |
| 3. 법적지위협정에 대한 한일 양측의 기본적인 입장 | |

主語語: 재일한국인(Koreans in Japan), 법적지위협정(Legal Status Agreement), 영주권(Permanent Residency), 외국인등록령(Foreign Registration Decree), 외국인등록법(Foreigner Registration Law)

1. 머리말

일본국 헌법 시행 전날인 1947년 5월 2일 「외국인등록령」을 공포하면서 조선인과 대만인 등 구식민지 출신자를 외국인으로 취급한다고 공포하게 된다.¹⁾ 한반도 출신으로 일본에 남아 있던 60여만 명 재일조선인의 국적을 「조선적」으로 표시했다.²⁾ 1947년 5월 식민지 출신의 재일조선인 관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칙령으로서 외국인등록령을 공포하여 이후 연합국과의 강화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의 구식민지 출신자들은 모두 외국인으로 취급되었고 외국인 등록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도록 하였다. 당시,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재일조선인들을 미군정의 치안 유지에 불안요소로 작용하는 집단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미군

* 이 논문은 2020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C2A02093140)

** 동의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일본어학과 교수

- 1) 「외국인등록령」은 일본국 헌법 시행 전날인 1947년 5월 2일 공포·시행된 마지막 포츠담 칙령이다. 「외국인등록령」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표에 따라 1952년 4월 28일 폐지되었다.
- 2) 1945년 일본 제국의 패망 후 1947년에 주일 미군정이 재일조선인에게 외국인 등록제도의 편의상 만들어 부여한 임시 국적으로, 현재는 이 가운데 대한민국이나 일본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

정이 재일조선인들에게 일본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을 받도록 지침을 내린 것도 어수선한 일본의 내치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일조선인들은 일본의 법 제도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던 것이다.

미군정은 재일조선인을 독립한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본 경찰권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으로 취급하면서 조선인들의 권리마저 박탈했다. 미군정은 재일조선인의 거주와 귀환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일제강점기처럼 송환의 대상으로 몰아갔다. 일본 정부는 1947년 외국인등록령을 실시해 재일조선인의 퇴거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일조선인의 기본적 인권과 민주적 권리를 탄압하였다. 그리고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전범국 지위에서 벗어나 국제무대로 복귀한 일본 정부는 예고도 없이 외국인등록령을 해제하며 일본 국적을 취득할 기회마저도 주지 않았다. 재일조선인은 한순간에 난민과도 같은 무국적자(국적이탈자)가 되었다.³⁾ 이에 재일조선인들은 자신들의 생활권과 거주권 확보 그리고 외국인으로서의 법적 지위 보장을 미군정 당국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한일회담⁴⁾에서는 오랜 기간에 걸친 협의 이후 1965년 6월 22일에 기본조약 및 제 협정과 더불어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 및 대우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정」(이하, 「법적지위협정」)이 조인되었다. 이 협정은 재일한국인의 영주권 문제, 강제퇴거 문제, 재산처리 문제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재일한국인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럼에도 이 협정 내용에 대해 재일한국인들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못했다. 그리고 한일회담에 반대했던 북한 지지자들이 거세게 비판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을 지지하며 한일회담을 촉구하던 사람들도부터도 불만이 표출되었다.⁵⁾ 이와 같은 법적 지위협정에 관련된 연구는 지금까지 김병목, 정인섭, 김광열, 도노무라, 김부찬, 장박진을 비롯한 많은 관련 연구자들에 의해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 또한 사실이다.⁶⁾ 이번 연구에서는

3)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평화조약 국적이탈자」로 칭한다. 미군정 때 외국인등록령에 의거해 이들을 임시로 「조선적」으로 분류, 무국적 외국인으로 등록하게 된다.

4) 한일회담은 1951년부터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이 타결되기까지 14년간 총 7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일련의 협정을 말한다.

5) 1965년 6월 22일 재일한국청년동맹은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자자손손 협정영주권의 보장, 강제퇴거 반대, 일본인과 동등한 사회보장 실시, 교육의 기회균등, 부당과세의 폐지 등을 주장하였다.

6) 김병목(1987)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경희법학』제22집, 경희법학연구소
정인섭(1990) 「재일한국인 법적지위협정 -그 운영 25년의 회고-」『재외한인연구』제1호, 재외한인학회
김광열(2004) 「전후 일본의 재일조선인 법적지위에 대한 정책」『한일민족문제연구』제6호, 한일민족문제학회
도노무라 마사루(2005) 「한일회담과 재일조선인 -법적지위와 처우 문제를 중심으로-」『역사문제연구』제14호
장박진(2009) 「한일회담에서의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교섭의 문제점 검토」『민족학연구』제8호, 한국민족학회

우선 이러한 연구성과를 살펴보고, 현재 동의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에서 구축하고 있는 「해방이후 재일조선인 관련 외교문서의 수집 해제 및 DB 구축」의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한국 정부 생산 외교문서에 나타난 법적지위협정 시행⁷⁾에 있어서의 여러 문제점과 그 해결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한일회담 법적지위에 관한 주요 내용

1951년말 한일회담의 예비회담을 시작으로 1952년 2월부터 제1차 회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한일예비회담에서 7차회담에 이르기까지 재일한국인 귀국 때 재산 제한을 철폐할 것과 일본에 영주하는 재일한국인의 권익을 보장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게 된다. 1951년 한일예비회담을 시작으로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이 타결되기까지의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련한 한일회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주요 논의 의제는 재일한국인의 영주권 범위 및 부여 방법, 영주권자 귀화문제, 강제 퇴거 문제, 재산반출 및 국적 확인 등이었음.
- (2) 한국측은 종전 당시부터 일본에 계속 거주한 자, 협정 체결 당시까지 출생한 그 자손 및 협정 체결 당시부터 상당한 기간 이내에 출생한 자손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함. 이에 대해 일본측은 영주권의 부여 범위가 확대되면 강제퇴거 사유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3) 원칙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종전부터 거주한 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 영주허가 신청기간, 양국의 국교친선을 해하는 자 및 마약범의 강제퇴거, 영구귀국자의 재산반출 및 송금 등에 관한 내용임.
- (4)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및 그 직계존속이 일본국에 거주하게 된 역사적 배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특별한 법적 지위와 처우를 부여함.

상기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일회담의 법적지위에 관한 회의를 통해서 도출된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가 재일한국인의 영주권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일회담의 논의 내용을 참고하면서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후에 진행된 재일한

김부찬(2012) 「재일교포 법적지위협정의 국제법적 의의와 문제점」 『법과 정책』 제18집 제1호, 법과정책 연구소

7) 법적지위협정의 시행기간은 1966년 1월 17일부터 1971년 1월 16일까지 5년간이며 25년 이내에 한국측의 요청이 있으면 일본은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대해 재협의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민의 법적지위협정 시행에 있어서의 영주권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 법적지위협정에 대한 한일 양측의 기본적인 입장

1951년 10월에 시작된 한일예비회담의 교섭에서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기까지 14년의 세월을 거친 한일회담의 본래의 취지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불법지배가 남긴 유산을 법적으로 청산하고 한일 양국 간의 새로운 정치·경제 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우호·통상조약」이 아닌 「기본관계조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고, 재일한국인의 지위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약의 경우에도 일본측은 재일한국인의 「대우」라는 표현을 사용하자고 주장했지만, 한국측은 처음부터 「법적지위」에 집착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측은 한일회담 초반에는 「법적지위」라는 용어는 그 개념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협정의 표제를 일본국에 재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우」에 관한 협정으로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한국측은 교섭의 경위나 협정에 규정되는 내용으로 보아 「법적지위」라는 용어 사용을 강력히 주장하여 한국측 입장을 관철시켜 「법적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으로 체결되었다(공보부)고 한다.

법적지위협정 제1조(영주권 관련)는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일본국에서 계속 거주하던 자(1항-a)와 그들의 직계비속으로 본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1971년 1월 16일)에 일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1항-b), 그리고 이들의 자녀로서 1항의 협정영주권 신청만료일이 경과한 후에 일본국에서 출생한 자(2항)에 대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영주신청 시에 제출하는 서류는 (1) 영주허가신청서, (2) 국적증명서, (3) 사진, (4) 가족관계 및 일본국 거주경력 진술서, (5) 외국인 등록증명서 등인데, 국적증명서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여권 또는 재외국민 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는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진술서를 우선 제출하고 일본 정부 당국의 조화에 관한 한국 정부의 확인으로 간소화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간소화 절차를 토대로 재일한국인 중에 조총련계에 속해 있는 자에 대해서도 폭넓게 포용하는 길이 열려 있다(공보부)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대해서는 주로 강제퇴거에 치중하여 외국인에 대한 강제송환권이 주권국가의 자주적 권한임을 내세워 「출입국관리령」에 따라 퇴거강제처분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은 재일한국인에 대해서는 일본의 국내법과 관계없이 그 지위의 특수성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강제퇴거

사유에 대해서는 일본의 「출입국관리령」과는 별도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법적지위협정을 토대로 시행된 영주권과 강제퇴거 문제에 대해서 당시 한국 정부의 외교문서를 토대로 고찰해보기로 한다.

4.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 시행에 따른 문제점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당시 한국 국적을 보유한 재일한국인에게는 협정영주권을 부여 하였으나 당시 협정영주권자 후손의 법적지위는 미해결 상태로 남겨두고 있었다. 이 문제를 협정 발효 시점인 1966년 1월 17일부터 25년 이내에 한국측의 요청이 있으면 일본은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대해 재협의하기로 결정하였다.⁸⁾ 한일회담 이후 영주권 신청에 대한 재일한국인들의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해 민단신문의 보도를 잠시 살펴보면, 한일회담 직전의 1965년 4월 18일자 신문기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관철, 영주권 문제 일보 전진, 처우문제의 계속 협의, 재일한국인의 영주권 범위와 처우문제에 관한 좌담회 개최 등이 헤드라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⁹⁾ 그리고 1966년 1월 17일 「법적지위협정」이 발효된 시점인 1월 18일자 신문 기사를 보면, 17일부터 재일한국인들의 영주권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영주허가서 양식, 출입국관리특별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면서 민단 지부를 통해 일괄 신청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조총련 산하 동포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영주권 신청을 통해서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계몽하는 내용의 기사가 헤드라인을 차지하고 있다.¹⁰⁾ 이처럼 「법적지위협정」의 핵심인 영주권 신청은 1966년 1월 17일 협정 발효와 더불어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1971년 1월 16일 영주권 신청이 마감될 때까지 5년 동안의 민단신문 주요 기사가 영주권 신청 촉진과 홍보에 주력하는 기사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재일한국인들에게는 영주권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영주권 신청 촉진과 관련된 외교문서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법적지위협정」의 발효시점인 1966년에는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현안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대사관과

8) 일본 정부가 허가한 협정영주권으로는 협정영주권자 후손의 법적지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 재협의 마감시한인 1991년 1월 한일 양국 간의 「합의각서」 채택을 통해 재일한국인 후손들에게 일률적으로 특별영주권이 부여되었다.

9) 한국신문 제828호(1965년 4월 18일자) 1~3면 참조

10) 한국신문 제849호(1966년 1월 18일자) 1~3면 참조

민단의 법적지위대우대책위원회(이하, 법대위) 간에 수차례에 걸친 법적지위협의회를 개최하여,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 및 현황을 파악하게 된다.¹¹⁾ 특히, 협정영주권 신청의 진척 상황 파악과 문제점 검토를 위해 한국 정부와 민단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은 한국 정부가 의도하는 바와 달리 좀처럼 순조롭게 진척되지 못하고 부진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이유로는 국적진술서 등의 서류작성이 지나치게 번거롭다는 점과 외교공관의 계몽 및 지도가 불충분했던 점, 영주허가의 실질적 이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재일한국인들이 많았다는 점에 있다고 판단하고 1967년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영주권 신청 촉진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 부진 사유에 대해서는 민단 법대위(위원장 이유천)가 한국 정부에 제출한 「본국정부에 대한 요청사항」에도 잘 나타나 있다.¹²⁾ 법대위의 청원서에 따르면, 1966년 1월 17일의 재일한국인 법적지위협정 발효에 따른 협정영주권과 일반영주권을 신청함에 있어서 재일한국인에 대한 주거 안정을 위해 일본 당국과 강력하게 교섭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청원서에는 영주권 신청의 부진의 사유로 전후 입국자 문제와 외국인등록증 문제, 출입국관리령에 의한 재입국허가의 심사 문제 등 부당한 조치를 당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와 교섭하여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요망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외에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2년 4월 28일) 때까지의 입국자 문제, 그 이후의 입국자 문제가 담겨져 있으며, 첨부서류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처우문제로서 사회보장 문제(각종 복지연금 적용,¹³⁾ 직업권, 재산권, 재산 반출 문제,¹⁴⁾ 세금공제에 대한 문제,¹⁵⁾ 현금 송금 문제,¹⁶⁾ 모국 투자방법 문제¹⁷⁾ 등이

11) 일본한국대사관과 민단의 법적지위대우대책위원회는 제1차(1966년 5월 19일)에서 제6차(1967년 1월 16일)까지 시행 1년 동안 총 6차례에 걸친 법적지위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12)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법적지위대우대책위원회(1967.1.25.) 「본국정부에 대한 요망사항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대우문제에 관하여-」

13) 각종 복지연금 적용에는 중심기업금융공고법, 국민금융공고법, 농어업금융공고법, 공영주택 입주, 주택 금융공고법 등을 전면적으로 적용시킬 것을 포함하고 있다.

14) 영주귀국자의 재산반출에 있어서 협정문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휴대품, 이사물품 및 직업용구의 휴대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일본에서 생산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그 사업시설에 전부 또는 귀국을 계기로 타업종 생산사업을 하려는 자에게는 외환수속없이 일화(日貨)로 동사업 시설을 구입반출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15) 한일협정 발효 이후 한국인 상공업자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세금공제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한국인에 대한 금융조치 등 보편책이 전무했던 실정에 비추어 외관상으로는 재산이 축적되어 있는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는 부채 등 빈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이므로 일본 세무당국의 이에 대한 시정 또는 완화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16) 영주귀국자의 현금 송금자에 있어서 1만불을 넘는 자에 대해서 매년 그 잔금의 5분의 1을 송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5등분하여 5년간에 송금할 수 있도록 시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17) 일본거주의 한국인 상공업자로서 모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현금이나 사업시설 등을 외환 조치없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다.

그리고 민단 법대위의 청원서 제출에 이어 다시 법적지위 진정단은 민단 중앙본부 주최로 개최된 제48회 3.1절 기념 경축민중대회에서 채택한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함께 첨부된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승만 대통령 예방을 요청하게 된다.¹⁸⁾ 이 진정서의 첨부자료로 제출된 민단 법대위의 「법적지위의 문제점과 해설」에는 앞서 제출한 청원서보다 한층 더 구체적인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점을 잘 정리하고 있다.¹⁹⁾ 이 진정서의 성명서에 따르면, 법적지위협정은 지금까지 무국적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재일한국인이 법적으로 그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하여 지금까지 자격이 다른 부모와 자식이 불안한 상태에서 생활해야 하고 가족 간의 이별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해방 직후에 일시 귀국하였는데 법적지위협정으로 인하여 불법입국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로 추방당할 수 있다는 재일한국인의 불안감과 위기감을 반영한 진정 내용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잡한 사정을 정당하게 처리하고 법적지위협정을 올바르게 운용하기 위해서 한일 양국 간의 「공동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 민의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당사자인 재일한국인 대표를 참가시킬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법적지위협정 시행에 관한 공동위원회 설치 요청은 1967년 2월 13일에 개최된 제9회 민단 중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민단 대표를 포함하는 한일 공동위원회 설치를 한일 양국 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이었다.²⁰⁾

여기에서 협정영주권 제도는 재일한국인의 기본적인 거주권을 무시한 퇴거강제 조항과 재입국 허가 등의 부수적인 조건이 붙어 있었다. 「법적지위협정」 제3조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일본에서 강제로 추방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 (1) 일본국에서 내란죄 및 외환에 관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2) 일본국에서 국교에 관한 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처분 받은 자 및 외국 원수 및 외교사절 또는 그 공관에 대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에 처하여지고 일본국의 외교상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 (3) 영리 목적으로 마약류 단속에 관한 일본국 법령을 위반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합법적으로 한국에 가지고 갈 길이 없기 때문에 한일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합법적인 길을 타개해줄 길 요청하고 있다.

18) 외아교 제725호 「대통령 각하에게 보내는 메시지」, 1967년 3월 15일

19)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법적지위대우대책위원회 「법적지위의 문제점과 해설」(1967.2.)

20) 한국신문 제870호(1967년 3월 28일) 1면 참조

- 금고형에 처해진 자. 또는 마약류 단속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3회 이상 형을 받은 자.
 (4) 일본의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진 자.

위의 협정에 따르면 영주권 허가를 받은 자의 재입국 허가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협정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일본 출국 후에 재입국을 희망할 때는 다시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에는 일본에 처음 입국하는 외국인과 동일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협정 조항의 이러한 내용은 일반 재일외국인의 영주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주일한국대사관을 비롯한 공관을 통해서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 시행을 위해 영주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예를 들어 1967년 주일한국대사관에서 외무부에 보내는 협정영주권 허가 신청 촉진 방안 관련 외교문서를 살펴보면, 협정영주권 신청 촉진을 위해 대사관의 안내서 배포 및 강연회 개최는 물론이고, 민단조직을 통한 촉진 운동과 교포신문을 통한 선전 홍보 등 더욱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민단의 법대위에 대한 발전적 개편을 지도하고, 영주허가 신청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각급 공관장에 통보하고 관할 민단장에게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게 된다. 재일한국인의 영주허가 신청 촉진을 위해 신청서류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국적증명서를 대신하는 국적에 관한 진술서 제출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공관의 적극적인 지도와 신청서류 간소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주일한국대사관이 작성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점 및 교섭현황」에서도 잘 알 수 있다.²¹⁾ 이 자료에 따르면, 구비서류가 과다하고 기입이 복잡하다는 점과 접수창구의 불친절 및 거주경력의 조사가 엄격하다는 점 등을 협정영주권 허가신청의 부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면, 1969년 주일한국대사관에서 외무부에 보내는 재일한국인 법적지위에 관한 청원 관련 외교문서를 살펴보기로 한다. 재일거류민단 단장 이희원이 대통령에게 제출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및 대우문제에 관한 청원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²²⁾

- (1) 협정영주권 문제 : 협정영주권을 신청함에 있어서 거주경력을 조사하지 않도록 할 것.
- (2) 전후 밀입국자에 대한 영주권 문제 : 대일평화조약 발효일(1952.4.28.) 이전에 입국한 자에게 일본입국관리령에 따른 일반영주권을 부여할 것.

21) 주일영 제725-1945호 「재일교포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점 및 교섭현황 송부」, 1967년 7월 18일

22) 외야교 제725-14643호 「재일교포 법적지위에 관한 청원」, 1969년 5월 26일

- (3) 일반 밀입국자에 대한 거주권 문제 : 대일평화조약 발효일부터 법적지위협정 서명일(1965.6.22.) 이전에 입국한 자에 대하여 거주권이 부여되도록 할 것.
- (4) 밀입국자 퇴거강제 문제 : 이상의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퇴거강제자를 인수하지 말 것.

(1)의 청원 사항은 해방 이전에 일본에 입국하였다가 해방 후 본국에 다녀감으로서 일본에서의 거주경력이 사실상 중단된 적이 있었던 자 중에서도 외국인등록증에 「126-2-6」으로 표시된 자²³⁾에 대해서는 계속 거주경력의 사실 조사를 하지 않고 협정영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2)의 경우는 해방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였으나 해방 이후 일시 귀국하였다가 대일평화조약 발표일 이전에 일본에 입국하여 거주해온 자에 대해서는 입국관리법령에 의한 일반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해방 이전부터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대일평화조약 발효일 이전에 일본에 입국한 자에게도 복잡한 심사를 하지 않고 일반영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3)의 청원 사항은 대일평화조약 발효일 이후부터 법적지위협정 서명일까지 일본에 밀입국한 자는 가족 구성 등 인도적인 견지와 법적지위협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거주권(특별재류허가)이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4)는 (1)-(3)의 청원 사항이 반영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강제퇴거자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인수를 거부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주일한국대사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²⁴⁾

- (1) 협정영주자의 거주력 추인에 관하여 민단에서 주장하는 126-2-6의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한 무조건인 협정영주권 부여 요구는 한일 간 법적지위협정 시행에 있어서 지금까지 양해사항 및 실무자회담의 경위에서 잘 나타난 일본측의 태도를 보아 현실성이 없는 요구라고 생각됨. 이 문제는 한일 양국 간의 고차적 회담에서 결격자의 구제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2) 일반영주권 신청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호의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실제로 허가된 자가 전무하다고 하지만,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과대해석을 하는지 이해하기 곤란함. 이 문제는 출입국관리령에 의한 것으로서 수속상의 서류가 복잡하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호의적으로 허가하고 있음. 좀 더 용이하게 허가될 수 있도록 계속 실무진과 접촉함

23) 재일조선인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률 제126호를 제정하여 별도의 재류자격이 정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법률 제126호를 통하여 종전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던 재일한국인들에게는 출입국관리령상의 재류자격과 관계없이 당분간 일본에 살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재일한국인 재류에 관해서는 제126호 제2조 6항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 126-2-6」이라고 칭한다.

24) 주일영 제725-1-2416호 「재일교포 법적지위에 관한 청원」, 1969년 7월 3일

효과적이라고 생각됨.

- (3) 법적지위협정 서명일까지 입국한 자까지도 일본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현단계에서는 문제를 제기함이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노력을 하는데 주력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 시행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주일한국대사관과 각 지역공관은 민단이 구성한 대책위원회와 함께 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민단은 재일한국인의 안정된 거주권 확보와 권익 옹호를 위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교섭 해서 해결해줄 것을 강력하게 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하여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처우에 대한 한일 간 실무자회담이 열리게 되는데,²⁵⁾ 그 실무자회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을 참고로 정리한 내용이다.²⁶⁾

(1) 제1차 실무자회담(1967.7.20.~21. 도쿄)

- 한국측은 협정 기본정신에 비추어 재일한국인이 일본 국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협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협정의 시행과정에서 생긴 제문제(특히, 협정영주 허가)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이에 대해 일본측은 협정영주허가 촉진을 포함하는 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측과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발언함.
- 한국측은 1945.8.15. 또는 그 이전부터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 자, 일본국적을 가진 자로 협정영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 협정영주신청 자격자가 일본국의 여행 중에 출산한 자녀 등에 대해서는 협정영주를 허가할 것과 협정 영주자 가족의 퇴거강제에 있어서 정상참작 및 인도적 견지에서 퇴거강제를 자제하도록 요청함.
- 이에 대해 일본측은 전전부터 일본거주가 확인된 자에 대한 사실조사 제외,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에 대한 인도적 고려, 협정영주자의 재입국기간 내 일본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그 자녀의 영주 신청 유자격자 취급, 협정영주자 가족의 퇴거강제에 대한 인도적 고려 의향 등을 표명함.

(2) 제2차 실무자회담(1968.11.5.~6. 도쿄)

- 협정영주권자의 거주력 추진 : 협정영주 신청자가 제1차 외국인 등록(1947)에는 누락되었으나 제2차 등록시 처음 등록하였을 경우에도 당해인이 전후에 입국했다는 의심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력 조사 없이 허가함.

25)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처우에 대한 실무자회담은 제1차 회담(1967.7.20.~21. 도쿄), 제2차 회담(1968.11.5.~6. 도쿄), 제3차 회담(1971.4.16.~17. 도쿄), 제4차 회담(1971.10.11.~12. 도쿄) 등이 개최되었다.

26) 외교부(1966~67)『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외교부(1968~69)『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외교부(1971)『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 협정영주권자의 재입국 : 금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형벌 위반자의 경우에 대해서도 여행목적이나 범죄, 거주상황 등 사정을 감안하여 인도적 견지에서 호의적으로 고려함.
- 협정영주권자 가족의 강제퇴거 : 가족구성 등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인도적 견지에서 고려할 것이며 일반협정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의 동거를 위한 입국도 호의적으로 고려할 것이므로 정식으로 일본에 입국할 것을 요망함.
- 출입국관리령에 의한 영주허가 : 해방 이후 1952.4.28.까지의 기간 중 일본 입국자는 일반영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1968.3월 이후에도 특별체류를 허가한 직후 일반영주를 허가하는 등 호의적인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청 자격자는 신속히 신청할 것을 요망함.

(3) 제3차 실무자회담(1971.4.16~17. 도쿄)

- 협정영주권 미신청자에 대한 구제 : 한국측은 협정영주권 미신청자에 대한 구제기회 부여를 요청했으나 일본측은 기신청자 35만 명은 만족할 만큼의 성과이므로 신청기간의 연장 및 재설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임을 나타냄.
- 협정영주권 신청자 허가문제 : 한국측은 거주력 조사 생략 및 신청자 전원에 대한 허가를 촉구했으며 일본측은 현재 형식적인 서면심사만 하기로 함.
- 재일한국인 처우 문제 : 한국측이 한국학교 졸업자에 대한 상급학교 진학 자격 인정을 요청한 데 대해서 일본측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냄. 기타 국민연금이나 공영주택, 재산권, 직업권, 출입국관리령상의 혜택 등에 대해서는 일본측이 호의적인 처리 입장을 밝힘.

(4) 제4차 실무자회담(1971.10.11~12. 도쿄)

- 협정영주권 미신청자에 대한 구제조치 : 일본측은 협정영주권의 신청기간 연장이나 재설정은 불가하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협정에 의하지 않더라도 영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강조함.
- 협정영주권 신청자의 허가문제 : 일본측은 계속 거주력을 조사하지 않을 방침이며, 협정영주권 허가를 받지 못한 신청자에게는 일반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함.
- 기타 : 일본측은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할 때 협정영주자에게 재입국 허가의 회수제인정 및 재입국 허가 기간의 연장, 본국 가족의 동거를 위한 신속한 허가 등에 대해 언급함.
- 사회보장을 통한 처우 향상 : 일본측은 재일한국인의 처우가 우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민간계 우대에는 반대하며, 국민연금법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보장 관련 제법은 법규정상 일본 국민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법 개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과 공영주택은 일본 국민에게만 적용되며 4개 한국학교 출신자의 상급학교 진학 인정은 불가하다는 등 기존의 입장을 반복함.

이렇게 해서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에 의한 영주권 신청기한인 1971년 1월 16일 시점을 기준으로 협정영주권 신청자수가 60만 교포 중에서 대략 35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²⁷⁾ 네 차례에 걸친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실무자회담의 주된 내용은 재일한국

인의 협정영주권 신청 허가 및 범위 확대, 강제퇴거 및 사회보장을 통한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이었다. 한국측은 재일조선인의 영주권 취득과 처우 향상을 위해 인도적 견지에서 호의적으로 처리해달라는 요청이었고, 일본측은 법적지위협정의 합의조항을 근거로 내세워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인 경우가 많았다. 실무자회담을 통해서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재일한국인이 존재하는 역사적인 배경에는 일본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재일한국인의 거주권을 보장해주는거녕,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자가 영주권을 신청했을 경우에 한해서 이를 허가하겠다는 논리로 일관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²⁸⁾

참고로 제4차 실무자회담이 개최되기 직전에 민단본부는 한국 정부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청원서 내용은 1971년 1월 16일로 신청기한이 마감되면서 재일한국인들에게 다가올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초조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²⁹⁾ 이 청원서에는 재일한국인의 영주권 신청기한의 연장 요청과 대우문제(사회보장관계 법령 및 금융관계법령 차별대우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청원서 내용에 담겨 있는 영주권 신청기한의 연장 요청 사유는 다음과 같다.

- (1) 일본정부가 전체 해당자에게 공지시킬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서 신청하지 못한 동포가 많다.
 - 신청안내서를 해당자 559,147명 중 12,000명 정도밖에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조총련의 허위선전에 속아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신청하지 못한 동포가 많다.
 - 협정영주권에 대한 행정상의 지도가 불충분하여 지방 구시정촌의 담당계원 자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신청마감 당일(토요일)에는 24시까지 접수하는 데가 있고 정오까지밖에 접수를 한 곳도 있는 등 행정상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
 - 1월 16일 이후 일본각급신문을 보고 비로소 영주권에 관한 사실을 알고 지금은 신청할 수 없느냐고 문의해온 사실이 많다.
- (2) 신청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았다.
 - 조총련의 방해공작과 폭력적인 저지행동을 배제하지 않음으로서 신청을 하기 위하여 구청에 까지 왔다가 조총련의 간부 및 친지 등이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음으로서 조총련 산하 동포들은 물론 중립계 동포들이 신청을 못하고 돌아갔다.
 - 신청마감 일자가 박두하자 조총련은 각급 조직간부를 총동원하여 각 시정촌 사무소의 신청접수 창구를 점령하고 소위 국적변경신청, 인감증명서 교부신청 등의 구실로 신청을 방해하고 신청용지를 접수시키면 탈취하여 찢는 등 난동을 부렸다.

27) 1970년쯤부터 대한민국 국적자수가 조선적을 추월하게 된다.

28) 조총련측은 재일조선인들은 모두 「법률 126-2-6」에 의한 재류를 계속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9)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본국정부에 대한 청원서」(1971.9.28.)

- 구시정촌은 조총련의 집단폭력을 구실로 접수를 지연 혹은 거부했다.
- 조총련 및 일본 혁신계 단체의 접수처 점령, 압력, 공갈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사실도 있다.

영주권 신청기한 연장 요청 사유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미흡과 조총련의 방해공작 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한 재일조선인이 많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영주권 신청기한 연장 요청은 일본측의 거부로 반영되지 못했다. 한국측의 영주권 신청기한 연장 요구에 대해 일본측은 행정적으로 신청기한 연장이 불가능하며 그 외에도 「법률 126-2-6호」 해당자에 대한 경과 조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결과적으로 협정영주권의 미신청자에 대한 구제 조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협정영주권은 한국적을 전제로 부여되면서 조총련계는 이를 외면하였기 때문에 동포사회 속의 이념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과 협정영주 3세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의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³⁰⁾

5. 맺음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면서 미군정의 일본 점령은 종결되었고, 주권을 회복한 일본 정부는 1952년 4월 28일 「외국인등록령」을 폐기하고 「외국인등록법」을 공포하여 재일한국인을 포함한 구식민지 출신자들에게 법적으로는 외국인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구식민지 출신자들에게 외국인으로 규정하면서 그들이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다. 「외국인등록법」의 시행과 더불어 법률 제126호를 공포하면서 재류 자격을 가지지 않고도 계속해서 일본 내에 거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일본 정부의 재일한국인에 대한 법적지위 정책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며 도의적인 측면에서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1965년 한일 양국은 1951년부터 시작된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을 마무리하고 한일기본조약과 더불어 4개의 하위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한일회담을 통해서 일본은 한국에 3억 달러의 무상원조와 2억 달러의 유상원조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국교정상화는 한국과 일본, 미국이 당면한 이해관계가 합치된 결과물이었다. 한국측은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수립된 박정희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민지 지배의 피해 청구라는

30) 정인섭(1990) 「재일한국인 법적지위협정 -그 운영 25년의 회고-」 『재외한인연구』 제1호, 재외한인학회, pp.22-23

명분으로 일본의 자본을 원조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일본측은 미일안보체제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국교 수립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미국측 역시 동북아시아의 공산세력 남하에 대처하기 위해 안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국교 수립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하지만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은 일본측이 제국주의 강제 점령 역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회담으로써 우려했던 여러 문제점들이 현실로 드러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 시행 과정을 통해서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처음에는 재일한국인이 대대로 일본에 영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결과적으로는 재일한국인의 형성과정에서 역사적인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가 무책임하게 재일한국인을 강제퇴거하려는 방침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법적지위협정의 제2조와 제3조의 내용 등은 일본 정부가 과연 재일한국인의 형성과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라고 한다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규정이었다는 사실을 법적지위협정 시행 기간 동안의 외교문서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개선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재일한국인 개개인이 일본사회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한 그들 각자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의 마련이었을 것이다.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재일한국인 차별 논리에 말려들어, 오히려 재일한국인이 민족적 자존심과 생존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역할을 한국 정부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해외에서 거주하는 자국민의 권익을 옹호해야 하는 국민국가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마저 지켜내지 못했으며, 친미 진영인 한국의 국적을 선택하는 자에게만 영주를 허가하고 조선적으로 남은 자에게는 영주권을 부여하지 않는 고립정책을 취하는 오류를 범했다. 민단 역시 조총련계에 대한 정치적 대항단체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정치적 전위대 역할에 충실하였던 바, 동포사회 전체의 구심체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결된 법적지위협정은 그 시행 과정에서 당연히 여러 문제점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참고문헌】

- 김경득(2005) 「재일조선인이 본 ‘재외동포법’과 향후의 과제」 『한일민족문제연구』 제5호, 한일민족문제학회
 김광열(2004) 「전후 일본의 재일조선인 법적지위에 대한 정책」 『한일민족문제연구』 제6호, 한일민족문제학회
 김병목(1987)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제22집, 경희법학연구소

김부찬(2012) 「재일교포 법적지위협정의 국제법적 의의와 문제점」『법과 정책』제18집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도노무라 마사루(2005) 「한일회담과 재일조선인 -법적지위와 처우 문제를 중심으로-」『역사문제연구』제14호, 역사문제연구소

윤건차(2016) 『자이니치의 정신사』한겨레출판사

장박진(2009) 「한일회담에서의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교섭의 문제점 검토」『민족학연구』제8호, 한국민족학회

정인섭(1990) 「재일한국인 법적지위협정 -그 운영 25년의 회고-」『재외한인연구』제1호, 재외한인학회

中村広司(2014) 「戦後の在日コリアン政策を通して見る日本の多文化共生イデオロギー」『日本言語文化』第27輯, 韓國日本言語文化學會

외교부(1966-67)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_____(1968-69)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_____(1971)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논문투고일 : 2022년 01월 05일
심사개시일 : 2022년 01월 16일
1차 수정일 : 2022년 02월 14일
2차 수정일 : 2022년 02월 18일
게재확정일 : 2022년 02월 22일

 <要旨>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 시행에 따른 영주권 문제 고찰

이경규

한일회담의 법적지위협정은 재일한국인의 영주권 문제, 강제퇴거 문제, 재산처리 문제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재일한국인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렇지만 이 협정 내용에 대해서는 재일한국인들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못했다. 그리고 한일회담에 반대했던 진영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를 지지하며 한일회담을 촉구하던 사람들도부터도 불만이 표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 시행 과정을 통해서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처음에는 재일한국인이 대대로 일본에 영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결과적으로는 재일한국인의 형성과정에서 역사적인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가 무책임하게 재일한국인을 강제퇴거하려는 방침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법적지위협정의 제2조와 제3조의 내용 등은 일본 정부가 과연 재일한국인의 형성과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라고 한다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규정이었다는 사실을 법적지위협정 시행 기간 동안의 외교문서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A review of the issue of permanent residence following the enforcement of the legal status agreement of Koreans in Japan

Lee, Gyoeng-Gyu

The legal status agreement of the Korea-Japan talks stipulates the issue of permanent residency, forced eviction, and property processing of Koreans in Japan, and opened a way for Koreans in Japan to obtain permanent residency. However, the evaluation of Koreans in Japan on the contents of this agreement was not positive. In addition, complaints were expressed not only from those in the camp who opposed the Korea-Japan talks, but also from those who supported them and urged the Korea-Japan talks.

These problems began to emerge through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legal status agreement for Koreans in Japan. In this process, the Korean government initially insisted on measures for Koreans in Japan to be able to live in Japan for generations. But, it was eventually the Japanese government that was historically responsible for the formation of Koreans in Japan. Through its enforcement process,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2 and 3 of this legal status agreement were confirmed in the diplomatic documents produced by the then Korean government that could not be tolerated, if the Japanese government were responsible for their formation.